

「2025년 충북 미래 모빌리티 기업 발굴·전환 지원사업」 컨설팅 공급기업 모집 공고

도내 미래 모빌리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해당 전문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모집내용

① 모집목적: 미래 모빌리티 기업 지원사업의 맞춤형 컨설팅* 풀(Pool) 구축

❖ **맞춤형 컨설팅**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반도체 제조기업 대상 미래 모빌리티 전환 관련 기업의 개별적인 시장 환경과 기술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컨설팅

② 신청대상: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분야 관련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기업 (지역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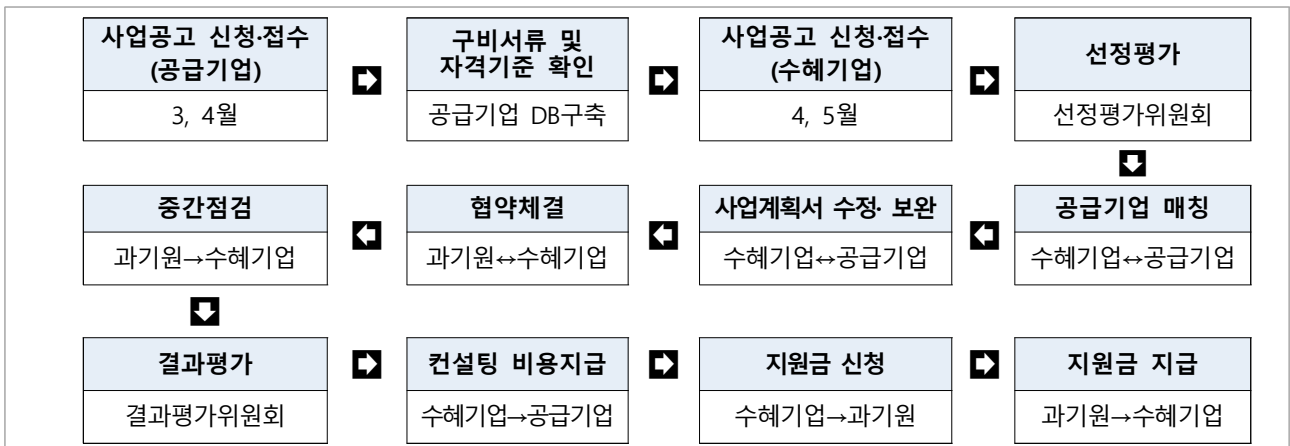
공급기업 자격요건	· 사업자 설립일이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 국내 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 · 대표자 포함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 상근 컨설턴트 중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붙임1 참조)
--------------	---

③ 수행내용: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반도체 제조기업 대상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 발굴 및 전환 지원 가능한 컨설팅 서비스 전반

모집분야	지원 세부 내용
기업 진단 및 신규 모델 발굴 컨설팅 지원	▶ 자율주행, 전동화 부품 관련 기업 전환을 위한 기업 진단 컨설팅 ▶ 자율주행, 전동화 부품 관련 신규 부품 비즈니스 모델 발굴
특허 및 기술이전 컨설팅 지원	▶ 자율주행, 전동화 부품 관련 특허 및 기술이전 컨설팅 지원
자율주행 부품 수요시장 및 마케팅 전략 분석 지원	▶ 미래 모빌리티 관련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3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신청 및 접수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공고일 ~ '25. 4. 25(금) 17:00시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인정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bizon.cbist.or.kr/)

③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수	참고	제출방식
1	- 공급기업 등록신청서 및 서약서	1부	양식 1	파일 제출
2	- 사업자등록증	1부	공고일 기준 유효한 발급 서류	
3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 자격요건 관련 서류(인원별 각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각 1부		
5	- 해당 컨설팅 수행실적증명서 * 세금계산서, 수행실적증명 등	해당부수		
6	- 기업 소개자료	해당부수		

4 제출요령

- 제출서류 순번대로 정렬 후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① 사업계획서 서식 내 작성요령 확인 필수
- ②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③ 온라인 접수처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④ 신청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제외 대상>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국세·지방세, 4대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 신청과제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과제중복)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수요·공급),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6 문의처

구 분	문의처(이메일)	TEL
사업관련 내용문의	디지털혁신부 융합기술팀(ttkim@cbist.or.kr)	043-210-0843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 컨설팅 수행경력 또는 전문자격 기준 중 선택

○ 컨설팅 수행경력 기준

등급	경력 기준	가점 및 인정 자격증 기준
특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경력 6년 인정 ·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2년 인정 · 기술사 자격 보유자 경력 6년 인정 · 지도사 자격 보유자 경력 2년 인정
1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4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지도/컨설팅 3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
- * 학력과 자격 보유 시 가점 중복 적용. 단, 복수 학력 또는 복수 자격의 경우 상위가점만 인정
- * (예시) 박사+기술사→12년(중복인정), 박사+석사→6년(상위 인정), 기술사+지도사→ 6년(상위 인정)

○ 전문자격 기준

등급	전문자격 기준	인정 자격 기준
특급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1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2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3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4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 * 수행경력 : 해당 분야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제출 필수